

Fullerton School District Student Support Services

Procedure for Use of Crutches, Wheelchairs, Cast and Assistive Devices on School Property Following Injury

부상에 따른 학교 시설에서의 목발, 휠체어, 조형 구조물 및 보조장비 사용 절차

풀러튼 교육구는 간혹 학생들이 학교에 출석하기 위해 목발, 휠체어, 조형 구조물 (기부스), 보행용 부츠, 붕대, 슬링, 부목 등과 같은 보조 장비들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상해에 따른 학교 참여 양식 “School Participation Following Injury” 참조). 이러한 장비들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캠퍼스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학생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잠재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의사의 서면 설명 없이 발생한 학생의 부상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학생은 의사의 서면으로 된 참여 권고사항이 있을 때까지 신체 활동 (예: 놀이, 체육)이 제한됩니다.

학부모는 목발, 휠체어, 또는 기타 보조 장비를 사용하는 학생이 학교에 돌아올 때 학교 사무실 직원에게 “School Participation Following Injury”, 상해에 따른 학교 참여 양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의문 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간호교사가 초빙됩니다.

학부모/또는 보호자는 다음 사항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1. 학생이 목발, 휠체어, 기부스, 또는 기타 보조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학생의 보조장비 사용 제한 및 사용 기간을 명시한 “School Participation Following Injury” 양식 작성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 양식에는 학생이 이러한 장비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지침을 받았다는 것을 명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한 학생에 한해서만 이러한 장비와 함께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음). 그렇지 않으면 학생은 가정이나 학교 사무실에서 임시로 완료해야 하는 학습 과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2. “School Participation Following Injury” 양식에는 체육과 쉬는 시간, 또는 기타 신체 활동으로부터 제외되는 예상 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학부모님은 학생에게 적합한 크기의 의사 승인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휠체어는 안전 벨트와 후진 안전 장치 (tip bars)가 있어야 합니다.
4. 학생의 상태가 변경되면 학부모는 학교 사무실 직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학교 사무실 직원이 학생이 목발, 휠체어, 또는 기타 보조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으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학생이 부상으로 인하여 보조 장비가 필요할 때 사무실 직원은 간호교사에게 알립니다.
2. 교직원들은 이러한 장비를 사용하는 동안 학생의 안전이 유지되도록 확인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교실로부터 또는 교실로 가는 계단이나 캠퍼스 혹은 교실의 장애물 등으로부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정해진 경로를 사용하게 됩니다. 학생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화장실 시설이 지정될 것입니다.
3. 필요한 경우, 학생의 책, 급식 쟁반 및 비상 상황에서의 도움을 위해 또다른 도우미 학생이 배정될 것입니다. 두 학생 모두 하교 시간에 맞춰 버스를 탈 수 있도록 5분 일찍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4. 학생이 안전하게 장비를 스스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교직원만이 부상당한 학생의 휠체어를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다른 학생들이 부상당한 학생의 휠체어를 운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School Participation Following Injury” form attached “부상에 따른 학교 참여” 양식 첨부